

제5대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회장선거 일정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2024.10.18.)

1. 관련

-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회장선거관리 규정
- 경장수 2024-175(2024.10.18.) “제5대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회장 선거 관련 공고 협조 및 게재 건”

2. 회장 후보자

- 기 간: 2024년 10월 18일(금) 09:00 ~ 10월 21일(월) 18:00
- 접수방법: 우편접수(기간엄수) 및 이메일접수(gdsf2015@hanmail.net)
- 장 소: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사무국(전화:031-462-2094 / 010-6381-8062)
경기도 군포시 송부로 291번안길 3-14 5층 503호(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 후보자공고: 2024년 10월 22일(화) 12시
- 제출서류
 - 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가족관계증명서(주민센터)
 - 이력서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증명서(법원)
 - 징계사실 유·무확인서(체육단체 경력 후보자)(별지 제4호 서식)
 -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 스포츠윤리센터 징계사실유무확인서(스포츠윤리센터)
 - 후보자 공탁금은 300만원으로 한다.(농협 301-0190-9435-61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 * 후보자 공탁금은 반환규정은 대한장애인수영연맹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1조의3(기탁금반환) 적용한다.

3. 선거인 명부

- 열람 기간: 2024년 10월 18일(금) ~ 10월 21일(월)
- 명부 확정: 2024년 10월 22일(화)

4. 회장선거

- 일 시: 2024년 10월 31일(목) 11:00
- 장 소: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사무실(군포시 송부로 291번안길 3-14 503호)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선거관리위원회



□ 경기도장애인수영연맹 임원의 결격사유 (관련규약: 정관 제24조)

제 24 조 (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우리 연맹의 회장이 될 수 없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우리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가.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마.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자
 - 바.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아.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자. 장애인체육회 또는 가맹단체, 민간단체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서 (성)폭력,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 등으로 해임된 사람
 - 차.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 성범죄,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군장애인체육회, 시군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카. 장애인체육회,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타. 국회의원, 도의원
3.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4. 우리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우리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우리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우리연맹과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우리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5.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6. 임원이 제1항부터 제5항에 해당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임한다.
7.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법인 또는 기타 단체 등은 장애인체육회, 우리연맹, 시·군장애인체육회, 지부연맹, 대한체육회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8. 관리단체로 지정되어 해임된 임원으로 관리단체 지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회장선거 관리규정

제 19 조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단, 제15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회장후보자 정견발표) 회장후보자의 정견발표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20 조(금지행위)

○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 선거관리위원 및 해당 시·도지부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
-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 21 조(선거방법)

- 선거는 무기명 비밀 투표로 한다.
-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대리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 31 조(회장 당선인 결정)

-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제 32 조(회장 당선인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연맹과 중앙연맹 및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3 조(재선거)

-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후보자가 없는 경우
 - 당선인이 없는 경우
 -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 결정이 있는 경우